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23. . . (제 회)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제출자	국무위원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3.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 주문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 이유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법률 제19237호, 2023. 3. 21. 공포, 9. 22. 시행)되어, 법령정비 요청, 재심의, 신속확인·임시허가 절차가 새로 도입됨에 따라 관련 서식을 정비 및 신설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실증특례 관련 서식 신설 및 정비(별지 제5호의2서식부터 제5호의6서식)
- 실증특례의 유형, 신청범위 등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신청서 서식 등(별지 제5호의2부터 제5호의4서식)을 개정하고, 새로 도입된 재심의 신청서(별지 제5호의5서식)·법령정비 요청서(별지 제5호의6 서식)를 새로 신설
- 나. 신속확인·임시허가 신청서 등 신청서식 신설(별지 제5호의7서식부터 제5호의11서식)
- 1) 신속확인 : 신속확인 신청서(별지 제5호의7서식), 결과통지서(별지 제5호의8 서식) 신설
 - 2) 임시허가 : 임시허가 (변경)신청서(별지 제5호의9서식), 임시허가서(별지 제5호의10서식), 유효기간 연장신청서(별지 제5호의11서식) 신설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3. 8. 10. ~ 9. 11.) 예정

3) 행정규제 : 규제 없음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제1항 중 “영 제19조의2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의”를 “영 제19조의2제3항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영 제19조의3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9조의4제3항의”를 “영 제19조의3제2항 및 제19조의4제3항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의 “영 제19조의4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의”를 “영 제19조의4제2항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별지 제5호의2호서식부터 제5호의4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하고, 별지 제5호의5서식 및 제5호의6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④ 영 제19조의3제3항에 따른 재심의 신청서는 별지 제5호의5서식에 따른다.

⑤ 영 제19조의9제1항에 따른 법령정비 요청서는 별지 제5호의6서식에 따른다.

제4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별지 제5호의7서식 및 제5호의8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3(신속확인 신청서 등) ① 영 제19조의15제1항에 따른 신속확인 신청서는 별지 제5호의7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19조의15제3항에 따른 신속확인 결과 통지서는 별지 제5호의 8서식에 따른다.

제4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별지 제5호의9서식부터 제5호의11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4(임시허가 신청서 등) ① 영 제19조의16제1항에 따른 임시허가 신청서는 별지 제5호의9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19조의16제4항에 따른 임시허가서는 별지 제5호의10서식에 따른다.

③ 영 제19조의17제2항에 따른 임시허가 유효기간 연장 신청서는 별지 제5호의11서식에 따른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의2(실증특례 신청서 등) ① <u>영 제19조의2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의</u> 실증특례 신청서는 별지 제5호의2서식에 따른다.	제4조의2(실증특례 신청서 등) ① <u>영 제19조의2제3항에 따른</u> ----- -----.
② <u>영 제19조의3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9조의4제3항의</u> 실증 특례 지정서는 별지 제5호의3서 식에 따른다.	② <u>영 제19조의3제2항 및 제19조 의4제3항에 따른</u> ----- -----.
③ <u>영 제19조의4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의</u> 실증특례 유효기간 연장 신청서는 별지 제5호의4서식에 따른다.	③ <u>영 제19조의4제2항에 따른</u> --- ----- -----.
<u><신 설></u>	④ <u>영 제19조의3제3항에 따른 재 심의 신청서는 별지 제5호의5서 식에 따른다.</u>
<u><신 설></u>	⑤ <u>영 제19조의9제1항에 따른 법 령정비 요청서는 별지 제5호의6 서식에 따른다.</u>
<u><신 설></u>	제4조의3(신속확인 신청서 등) ① <u>영 제19조의15제1항에 따른 신 속확인 신청서는 별지 제5호의7 서식에 따른다.</u>
	② <u>영 제19조의15제3항에 따른 신 속확인 결과 통지서는 별지 제5</u>

<신 설>

호의8서식에 따른다.

제4조의4(임시허가 신청서 등) ①

영 제19조의16제1항에 따른 임시허가 신청서는 별지 제5호의 9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19조의16제4항에 따른 임시허가서는 별지 제5호의10서식에 따른다.

③ 영 제19조의17제2항에 따른 임시허가 유효기간 연장 신청서는 별지 제5호의11서식에 따른다.

별지 제5호의2서식은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별지 제5호의2서식] <개정 2023. 09. 22.>

실증특례 (변경)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으며,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시	
신청인	사업자명(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 사업자인 경우에만 기재합니다.	
		법인등록번호 ※ 법인인 경우에만 기재합니다.	
	본점 주소	유형 []대학 []출연연 []기업 []기타	
	연구개발특구 내 소재기관 주소 ※ 본점 주소와 다른 경우만 기재합니다.		
	실증책임자명(직위)	전화번호	전자우편
신기술 실증특례 신청내용	신기술의 명칭 및 실증의 주요 내용		
	추진 지역		
	실증특례 관련 법령		
	유효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총 개월)		
	실증범위		
변경내용	변경사항		
	변경사유		
실증을 위한	[] 허가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에 기준·규격·요건 등이 없는 경우		
규제특례	[] 허가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에 따른 기준·규격·요건 등을 적용하는 것이 불명확하거나 불합리한 경우		
신청사유	[]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라 허가등을 신청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6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2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기술 실증특례를 신청합니다.			
		신청인 성명	년 월 일 (서명 또는 인)
※ 공동신청을 하는 경우에만 기재합니다.		공동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귀하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신청인 제출서류	1. 다음 각 목의 내용을 담은 실증을 위한 실증특례 계획서(실증계획서) 1부 가. 실증특례 대상이 되는 신기술의 명칭 및 내용 나. 신기술 실증의 범위, 추진 방법, 추진 일정 다. 신기술 실증을 위하여 필요한 규제특례의 내용, 기간 및 관련 법령 라. 실증특례 신청자의 재정적·기술적 능력 2. 신청한 실증특례가 법 제16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자료 3. 실증특례 신기술의 이용자 및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자의 존재여부, 대상, 규모 및 보호 방법을 포함한 실증특례 안전성 확보 계획서 4. 그 밖에 실증특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제출을 요청하는 서류
---------------------	---

처리 절차

신청	➔	접수	➔	신청내용 통지	➔	검토 및 결과 회신	➔	심의·의결	➔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지정
신청자		과학기술정보 통신부장관		과학기술정보 통신부장관		관계기관의 장		연구개발 특구위원회		과학기술정보 통신부장관

별지 제5호의3서식은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별지 제5호의3서식] <개정 2023. 09. 22.>

실증특례 지정서

지정번호			지정연월일		
실증특례 지정인	사업자명(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 사업자인 경우에만 기재합니다.		
			법인등록번호 ※ 법인인 경우에만 기재합니다.		
	본점 주소				
	연구개발특구 내 기관 주소 ※ 본점 주소와 다른 경우만 기재합니다.				
	실증책임자명(직위)				
신기술의 명칭					
추진 지역					
주요 내용					
관련 법령					
유효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총 개월)		
연장된 유효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총 개월)		
	※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6조의2제4항에 따라 연장된 유효기간을 말합니다.				
지정 조건	※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6조의2제3항 후단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붙인 조건을 말합니다.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6조의2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3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실증특례 지정서를 발급합니다.

년 월 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직인

210mm×297mm[백상지(150g/㎡)]

■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별지 제5호의4서식] <개정 2023. 09. 22.>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으며,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앞쪽)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6조의2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4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실증특례 유효기간 연장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서명 또는 인)
(서명 또는 인)

※ 공동신청을 하는 경우에만 기재합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귀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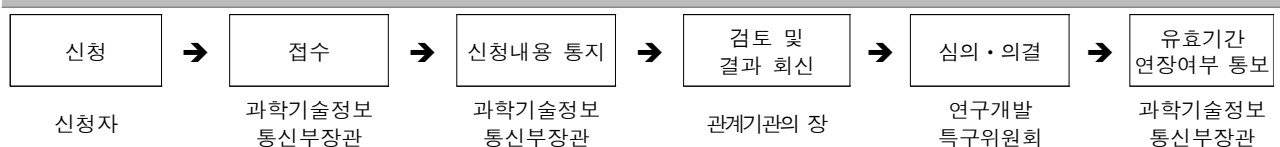
공동신청인 성명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신청인
제출서류

1.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9조의3제2항에 따른 실증특례 지정서 사본
2. 실증특례 유효기간의 연장 사유서 및 연장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3. 실증특례 이용현황 및 활용실적이 포함된 자료
4.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6조의3제7항 본문에 따른 책임보험의 갱신 또는 가입계획서(실증특례 유효기간 연장을 신청하려는 자가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10제2항에 따라 책임보험을 갱신하거나 새로 가입을 해야 할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5.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6조의3제7항 단서에 따른 별도의 배상방안의 연장 계획서(실증특례 유효기간 연장으로 배상방안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6. 신기술의 실증으로 발생한 안전사고 및 손해배상 등의 발생 여부를 적은 서류
7. 그 밖에 실증특례 유효기간 연장의 타당성을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제출을 요청하는 서류

처리 절차



별지 제5호의5서식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별지 제5호의5서식] <신설 2023. 09. 22.>

재심의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으며,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시	
신청인	사업자명(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 사업자인 경우에만 기재합니다.	
		법인등록번호 ※ 법인인 경우에만 기재합니다.	
	본점 주소	유형 []대학 []출연연 []기업 []기타	
	연구개발특구 내 소재기관 주소 ※ 본점 주소와 다른 경우만 기재합니다.		
	실증책임자명(직위)	전화번호	전자우편
신청사유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6조의2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3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재심의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

※ 공동신청을 하는 경우에만 기재합니다. 공동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1. 다음 각 목의 내용을 담은 실증을 위한 실증특례 계획서(실증계획서) 1부 가. 실증특례 대상이 되는 신기술의 명칭 및 내용 나. 신기술 실증의 범위, 추진 방법, 추진 일정 다. 신기술 실증을 위하여 필요한 규제특례의 내용, 기간 및 관련 법령 라. 실증특례 신청자의 재정적·기술적 능력 2. 신청한 실증특례가 법 제16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자료 3. 실증특례 신기술의 이용자 및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자의 존재여부, 대상, 규모 및 보호 방법을 포함한 실증 특례 안전성 확보 계획서 4. 재심의 신청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 5. 그 밖에 재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제출을 요청하는 서류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별지 제5호의6서식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별지 제5호의6서식] <신설 2023. 09. 22.>

법령정비 요청서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요청자가 작성하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시	
요청인	사업자명(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 사업자인 경우에만 기재합니다.	
		법인등록번호 ※ 법인인 경우에만 기재합니다.	
	본점 주소	유형 []대학 []출연연 []기업 []기타	
	연구개발특구 내 소재기관 주소 ※ 본점 주소와 다른 경우만 기재합니다.		
	실증책임자명(직위)	전화번호	전자우편
신기술	신기술의 명칭(지정번호) 및 실증의 주요 내용		
	유효기간		
실증특례	년 월 일 ~ 년 월 일 (총 개월)		
신청내용	조건 ※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6조의2제3항 후단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에 붙인 조건을 말합니다.		
법령정비	정비요청 법령		
	※ 요청자가 정비를 요청하는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사항과 관련된 법령을 모두 적습니다.		
요청내용	요청자의 의견 ※ 법령정비 요청 이유, 제정·개정 방향 등을 포함하여 적습니다.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6조의2제1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9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법령의 정비를 요청합니다.			
		신청인 성명	년 월 일 (서명 또는 인)
※ 공동신청을 하는 경우에만 기재합니다.		공동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귀하			
붙임서류	1.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6조의2제3항 후단에 따른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지정 조건의 이행 여부(조건을 붙인 경우로 한정합니다)		수수료 없 음
	2.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9조의2제3항제1호에 따른 실증특례 계획서의 이행 현황		
	3. 해당 신기술에 대한 실증 관련 안전사고 및 손해배상 등의 발생 여부		
	4. 책임보험의 보험기간 연장 또는 손해배상 변경 계획서(「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6조의2제15항에 따라 실증특례의 유효기간이 종료되지 않은 것으로 보는 기간 동안 실증을 계속하려는 경우로 한정합니다)		
	5. 그 밖에 법령정비 필요 여부 및 개선 방향 판단을 위한 자료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인정하는 자료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별지 제5호의7서식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의7서식] <신설 2023. 09. 22.>

신속확인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곳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시	
신청인	사업자명(대표자)		사업자(법인)등록번호
			※ 사업자(법인)등록번호가 있는 경우 기재
	주소		
	대표자명	전화번호	전자우편
실증 대상 신기술 또는 신기술 서비스·제품	명칭		
	주요내용		
소관 행정기관 또는 지자체	예상되는 소관 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아는 경우 기재)	예상되는 허가 등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6조의6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15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실증 대상 신기술 또는 신기술 서비스·제품과 관련된 허가 등의 필요 여부를 확인하여 줄 것을 신청합니다.

신청인 성명

년 월 일
(서명 또는 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실증 대상 신기술 또는 신기술 서비스·제품에 대한 설명서 1부							
처리 절차								
신청	→	접수	→	관계기관의 장에게 통보	→	검토 후 회신 (30일 이내)	→	결과 통지
신청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관계기관의 장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별지 제5호의8서식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의8서식] <신설 2023. 09. 22.>

신속확인 결과통지서

신청인	사업자명(대표자)	사업자(법인)등록번호
	※ 사업자(법인)등록번호가 있는 경우 기재	
	주소	
	대표자	
실증 대상	명칭	
신기술 또는		
신기술		
제품·서비스		
신속확인 결과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관계 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허가 등이 필요합니다.	
	※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회신한 허가등에 필요한 조건·절차 등 첨부(관계 법령 포함)	
	2.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관계 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허가 등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 밖의 안내 사항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6조의6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15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규제 신속확인 결과를 통지합니다.

년 월 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별지 제5호의9서식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별지 제5호의9서식] <신설 2023. 09. 22.>

임시허가 (변경)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으며,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시
------	------

신청인	사업자명(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 사업자인 경우에만 기재합니다.
		법인등록번호 ※ 법인인 경우에만 기재합니다.
	본점 주소	유형 []대학 []출연연 []기업 []기타
	연구개발특구 내 소재기관 주소 ※ 본점 주소와 다른 경우만 기재합니다.	

신기술 서비스·제품	명칭
	주요내용

임시허가	[] 신기술 서비스·제품에 대한 허가 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에 기준·규격·요건 등이 없는 경우
신청사유	[] 신기술 서비스·제품에 대한 허가 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에 따른 기준·규격·요건 등을 적용하는 것이 불명확하거나 불합리한 경우

변경내용	변경사항
	변경사유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6조의7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16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임시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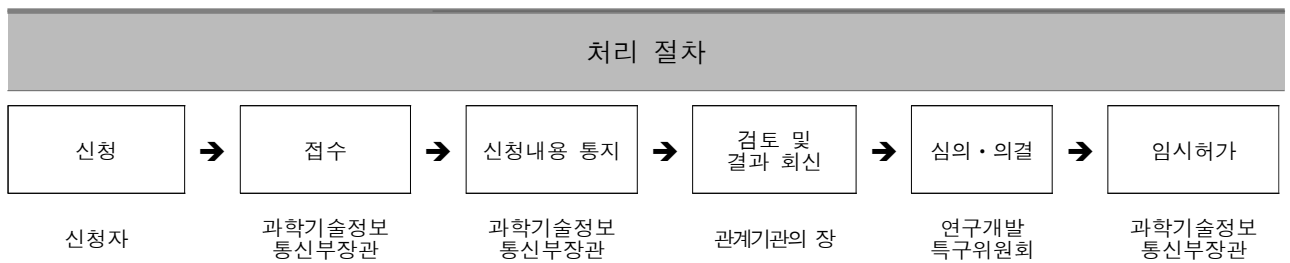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1. 다음 각 목의 내용을 담은 사업계획서 1부 가. 신기술 서비스·제품의 명칭 및 내용 나. 신기술 서비스·제품의 사업범위·추진방법·주요 이용 대상자 및 임시허가의 기간 등 다. 임시허가 신청자의 재정적·기술적 능력 2. 신청한 임시허가가 법 제16조의7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자료 3. 해당 신기술 서비스·제품의 혁신성 및 이용자의 편의 증진에 관한 설명자료 4. 신기술 서비스·제품의 안전성 검증 자료 및 이용자 보호방안 5. 그 밖에 임시허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제출을 요청하는 서류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별지 제5호의10서식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별지 제5호의10서식] <신설 2023. 09. 22.>

임시허가서

허가번호			허가연월일		
임시허가를 받은 자	사업자명(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 사업자인 경우에만 기재합니다.			
		법인등록번호 ※ 법인인 경우에만 기재합니다.			
	주소	연구개발특구 내 기관 주소 ※ 본점 주소와 다른 경우만 기재합니다.			
신기술 서비스제품의 명칭					
추진 지역					
주요 내용					
관련 법령					
유효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총 개월)
연장된 유효기간	※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6조의7제5항에 따라 연장된 유효기간을 말합니다.				
허가 조건	※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6조의7제4항 후단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붙인 조건을 말합니다.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6조의7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16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임시허가서를 발급합니다.

년 월 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직인

210mm×297mm[백상지(150g/㎡)]

별지 제5호의11서식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별지 제5호의11서식] <신설 2023. 09. 22.>

임시허가 유효기간 연장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으며,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시		
신청인	사업자명(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 사업자인 경우에만 기재합니다.	
		법인등록번호 ※ 법인인 경우에만 기재합니다.	
	본점 주소	유형 []대학 []출연연 []기업 []기타	
	연구개발특구 내 소재기관 주소 ※ 본점 주소와 다른 경우만 기재합니다.		
기존 임시허가 신청내용	허가번호		허가연월일
	신기술 서비스·제품의 명칭		
	추진 지역		
	주요 내용		
	관련 법령		
	유효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총 개월)		
	허가 조건 ※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6조의7제4항 후단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붙인 조건을 말합니다.		
연장신청기간 및 연장 사유	연장신청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총 개월)		
	연장 사유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6조의7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17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임시허가 유효기간 연장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

※ 공동신청을 하는 경우에만 기재합니다.

공동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귀하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신청인 제출서류	1.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9조의16제4항에 따른 임시허가서 사본
	2. 임시허가 유효기간의 연장 사유서 및 연장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신청인 제출서류	3. 신기술 서비스·제품 이용현황 및 활용실적이 포함된 자료
	4.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6조의7제13항 본문에 따른 책임보험의 갱신 또는 가입계획서(임시허가 유효기간 연장을 신청하려는 자가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10제2항에 따라 책임보험을 갱신하거나 새로 가입을 해야 할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5.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6조의7제13항 단서에 따른 별도의 배상방안의 연장 계획서(임시허가 유효기간 연장으로 배상방안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6. 해당 신기술 서비스·제품 관련 법령 정비 여부 및 개선방향 판단을 위한 자료
	7. 그 밖에 임시허가 유효기간 연장의 타당성을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제출을 요청하는 서류

처리 절차										
신청	➔	접수	➔	신청내용 통지	➔	검토 및 결과 회신	➔	심의·의결	➔	유효기간 연장여부 통보
신청자		과학기술정보 통신부장관		과학기술정보 통신부장관		관계기관의 장		연구개발 특구위원회		과학기술정보 통신부장관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의안 소관 부서명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지역과학기술진흥과	
연 락 처	(044) 202 - 4743